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성훈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201

발의연월일: 2025. 1. 2.

발 의 자: 박성훈·이종욱·이헌승

김성원 · 안상훈 · 김기웅

김도읍 • 임이자 • 김종양

이상회 • 조배숙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일선현장에서 「건축사법」 위반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, 이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 및 징계 등 행정처분 권한을 가지고 있으나, 전국 각 지역별 일선현장 의 위반행위에 대한 국토교통부 본부 차원의 신속한 조사·대응에 한 계가 있는 실정임.

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현장 기반의 전문성을 갖춘 소속기관에서 각지역별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38조의11).

법률 제 호

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건축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8조의11의 제목 "(권한의 위임 및 위탁)"을 "(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)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이나 시·도지사에게 위임할 수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38조의11(권한의 위임 및 위탁)	제38조의11 <u>(권한 등의 위임 및 위</u>		
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	<u>탁)</u>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		
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	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		
따른 권한의 일부를 시·도지사	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		
에게 위임할 수 있다.	<u>속기관의 장이나 시·도지사에</u>		
	게 위임할 수 있다.		
② ~ ⑤ (생 략)	② ~ ⑤ (현행과 같음)		